

대한럭비협회 도핑방지규정 규정

제정

2025. 5. 23.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세계도핑방지기구(WADA)규약 및 관련 국제 표준과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 및 경기단체 도핑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도핑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관련 국제표준과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.

1. 경기단체(산하단체 포함)
2. 선수
3. 선수지원요원

제4조(협회의 도핑방지활동) 다음과 각호의 도핑방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관할 내 도핑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
2.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도핑방지교육 및 도핑검사 활동지원
3.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(IF)과의 협력체계 구축
4.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관리
5. 관할 내 산하단체가 세계도핑방지규약, 관련 국제표준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하도록 관리·감독

제 5 조(선수 및 선수지원 요원의 의무) ① 선수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1. 도핑방지규정 숙지 및 준수
2. 도핑검사 요청 시 시료 제공
3. 연간 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 이수
4. 한국도핑방지규정 제9조에 따른 역할과 책임

② 선수지원요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선수의 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 지원 도핑검사 요청시 시료 제공

2.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0조에 따른 역할과 책임

제 6 조(도핑검사 등 협력) ① 협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시행하는 의무 도핑 검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.

1. 도핑관리실 설치 및 검사 환경 조성
2. 올림픽,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 명단 확정시,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요청에 따라 명단 제공
3. 경기기간 외 검사 시행을 위한 훈련 장소, 훈련계획, 소재지 정보 제공

② 협회는 선수의 도핑검사 회피,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.

제 7 조(교육 및 예방) 협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도핑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,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정보제공 및 조사 협력) ① 협회는 KADA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조사 요청 시 다음 각호의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등록 확인서, 경기 실적 증명서 등 자료 제공
2. 조사대상자의 협조 안내 및 참석 독려
3. 자격정지 선수 등의 경기 참가 여부 모니터링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안내

② 협회는 잠재적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경우,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제 9 조(제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구속력) ① 협회와 선수 등 간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내린 도핑방지규정위반 등과 관련한 결정, 치료목적사용면책 관련 결정 등(이하“도핑분쟁”)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의 항소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. 도핑 분쟁에 대하여 국가항소기구에 불복을 하는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제재결정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당사자가 불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을 하여 중재에 의하여 판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및 중재판정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다. 다만, 국제적 경기와 관련한 도핑분쟁 시안에서 국제스포츠규범에 따라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(CAS)에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추가 제재조치) ① 선수 등 협회 관할에 있는 자가 도핑방지규정위반 시에는 협회의 별도 결정에 따라 해당 위반 정도에 따라 아래 각호에 따른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

1.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, 임원 자격 박탈 또는 권한 제한
2. 단체지원 교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
3. 협회 포상 및 공적자격의 박탈 또는 권한 제한
4. 기타 단체가 부과하는 자격 제한 또는 권한 제한

② 추가 제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제재결정과 별도로 시행되며,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.

제11조(규정관리 및 해석)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범위 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규정 상호간에 해석상 상충이 발생할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관련 국제표준이 우선한다.

부 칙(2025. 05. 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